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98
----------	-----

2019년 9월 2일  
교 육 위 원 회

I .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8월 1일, 장인홍 의원

2.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3. 상정일자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9년 9월 2일 상정, 원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장인홍 의원)

1. 제안이유

○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취약 학생들의 교육소외 해소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내용

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종류,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사업전담인력의 배치 및 역할, 보수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8월 1일 장인홍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798호로 발의되어 2019년 8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상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sup>1)</sup>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

1)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계층 간 교육격차,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정책을 수립하였고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2012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이 2003년부터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었음.

제고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이러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그리고 「2019학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 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의 교육적, 문화적 결손을 예방·치유하여 대상 유아 및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sup>2)</sup>

**[표1] 2019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단위: 천원)

세세부사업	사업 항목	항목별 예산액	세세부사업별 예산액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지원	교육복지학교사업비	26,432,120	31,107,826
	두런두런프로그램운영	414,066	
	서울희망교실 운영	4,261,640	
교육복지지원활성화	교육복지조정자채용	1,236,849	1,779,315
	교육복지우선지원성과관리 외 10개 사업	542,466	

- 그러나 현행 법령은 구체적인 사업의 종류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사항, 사업전담인력의 배치와 역할, 자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조례안이 상위법령의 미비점을 보충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 그리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적 조치로 사료됩니다.

##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2) 2003년부터 초기에는 행정동 중심의 지역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점차 빈곤층 밀집학교가 소재한 지역으로 확대되었음. 또한 사업 초기부터 지난 2010년까지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다가, 2011년부터는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 학교와 지역이 확대되었음(동 사업의 연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1] 참고).

○ 동 조례안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책무의(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총칙 규정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 전담인력의 배치, 역할, 보수와 자격, 사업전담부서의 설치·운영, 그리고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의 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과 지역기반 교육 복지 협력사업 등(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본칙 규정의 총 1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요 조문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5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사업의 비전, 추진 목표와 방향, 추진과제, 전년도 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와 개선사항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sup>3)</sup>

이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주체의 대외적 신뢰성을 고취시키고,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6조(사업의 종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건강한 심리 정서 안정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의<sup>4)</sup> 지원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사업 수혜자의 교육적 수요에 보다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현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별도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4)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 다음으로 안 제9조(사업전담인력의 배치 및 역할)와 제10조(사업전담인력의 보수 및 자격)는 사업전담인력의 배치와 역할, 보수와 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3조의5)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6)

**[표2] 사업전담인력 현황(2019.4.22. 기준)**

전담인력		인원
교육복지조정자	본청	1명
	교육지원청	22명
지역사회전문가	초·중 거점학교(293교)	293명
유아교육복지전문가	거점유치원(11원)	11명
계		327명

○ 다음으로 안 제12조(실태조사 및 연구지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 5) 제12조(사업전담인력의 배치·활용) ① 사업학교와 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은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사업학교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2. 사업대상학생을 위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3. 사업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  
 4.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지원 등  
 ③교육지원청 및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학교와 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교육지원청 및 시·도 교육청의 사업계획에 반영  
 2. 사업이 필요한 학교의 발굴과 지원  
 3. 지역사회 교육복지 자원의 발굴과 활용  
 4. 사업학교 간 연계·협력 지원 등
- 제13조(사업전담인력의 보수 및 자격) ① 사업전담인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3】의 7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경력기간을 추가하거나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경력기준 차이 등 세부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한다.  
 1. 교육, 문화, 복지 등 활동경험이 있는 자  
 2.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  
 3.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4.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 관련자격증 소지자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6) 전담인력의 신분과 자격요건, 급여와 복리후생 등은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2] 참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제12조제3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동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제6조에<sup>7)</sup> 따라 위탁운영 되고 있는 지역교육복지센터의 경우<sup>8)</sup> 교육수요자의 관점에서 위탁운영의 효과성, 지속성 등에 대해 보다 폭넓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안 제12조가 교육복지지원사업의 개선·발전을 위한 실태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 밖에 동 조례안은 조문별 구성 체계와 상위법령과의 입법체계 등에 있어 「2018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19 자치법규 업무 매뉴얼」 (행정안전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제처)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 7) 제6조(지역교육복지센터)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자치구 단위로 지역교육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당지역 내의 교육복지 자원 조사 및 개발  
2.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역기관 간 공동사례 관리  
4.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지역주민을 활용한 자원봉사자 양성  
5. 그 밖의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교육복지 지원사업  
③ 교육감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자치구에게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센터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각 센터에는 학교, 자치구, 교육지원청에서 추천받은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복지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8)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연혁 및 운영 현황은 [붙임3] 참고.

참고로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동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1282, 2019.8.21).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7조,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부적응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정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학교”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로써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를 말한다.
4. “지역기반 교육복지 협력사업”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육감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취약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지역교육복지센터”란 교육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또는 자치구 단위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되던 지역기반 교육복지 협력사업 및 지역교육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이하 “사업”이라 한다)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비전,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과제
2. 전년도 사업에 대한 운영 성과와 개선사항
3. 사업학교 및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업 예산과 운용 기준, 집행 방법
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종류)**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3. 건강한 심리 정서 안정화 사업
4.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복지 지원 사업

5.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교육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사업
6. 그 밖에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대상학생)** 사업대상학생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다.

**제8조(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사업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교부한 사업비를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감은 사업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업 운영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제9조(사업전담인력의 배치 및 역할)** ① 교육감은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청, 교육지원청, 지역교육복지센터, 사업학교 등에 사업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전담인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역과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복지네트워크 구축
2. 사업대상학생의 발굴 및 지원
3. 사업계획의 수립·지원, 사업의 운영과 평가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③ 교육감과 사업학교의 장은 사업전담인력이 제2항에 따른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전담인력의 보수 및 자격)** ① 교육감은 제9조의 사업전담인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하여 보수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되는 지역교육복지센터 소속 직원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제9조의 사업전담인력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세부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1. 교육, 문화, 복지 등 활동경험이 있는 사람
2. 학교와 지역의 연계 등 교육관련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한 사람
4.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교사 자격증 등 관련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사업전담부서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관한 업무를 조정·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관리한다.

1. 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2. 교육복지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실태조사
3. 사업의 선정 및 지원
4. 사업의 평가
5. 그 밖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실태조사 및 연구 지원)**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사업 지원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사업 만족도 등의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의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시행결과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지역기반 교육복지 협력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역기반의 교육복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